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15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용태
김태규 · 김승수 · 김정재
김기현 · 김성원 · 강명구
윤상현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정 지원)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6조(재정 지원) ① ~ ③ (현 행과 같음)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 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 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u>